

1.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1948년)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서명 : 1948. 9. 11.

발효 : 1948. 9. 20.

서 문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는 대한민국대통령이 재한미국육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9일의 통첩 급 재한미국육군사령관이 대한민국대통령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11일의 통첩에 감하여, 또는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에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체결을 요함에 감하여 하기 서명인은 해 목적으로 각자 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좌와 여히 협정함.

제 1 조

미국정부는 좌기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일절의 권리 명의 급 이익을 자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우에 좌기 재산이라함은 지방세무서 부동산태장 급 도면 또는 법원부동산등기부에 국유재산으로 기재된 바 재조선미군정청 급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절 재산, 해재산에 가한 일절의 개량 일절의 현금 급 은행예금, 또는 현재까지 미국정부가 한국경제에 제공한 일절의 구조물자 급 재건물자를 포함하여, 남조선과도정부각부처 급 대행기관이 보유한 일절의 설비, 물자 급 기타 재산을 지칭함. 미국정부가 조선국방경비대, 경찰 우는 해안경비대에 제공한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여사한 군용재산의 이양은 미국국무성 해외물자청산 위원회를 통하여 차를 행하며 차이양은 미국국무성 해외물자청산위원회 급 대한민국정부간에 체결된 별도의 협정에 의하여 차를 행함. 대한민국정부는 재한미국 육군이 철퇴기간중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우는 관리하는 재산은 해 철퇴기간중 미국정부로 하여금 차를 사용하게 하며 미국정부에 부다없이 차를 보존할 것을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부록 갑에 특기한 재사를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하게 할 것을 협약하며, 동시에 대한민국정부는 남조선과도정부가 조선은행에서 인출한 당좌대월금에 대한 일절책임, 재조선미군정청, 그 대행기관 급 남조선과도정부가 부담한 기타 일절의 채무를, 현재 급 미래의 일절 소청건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여, 자에 미국정부로부터 인수하며 미국정부로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 함.

본항은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에, 대한민국정부의 원조에 관한 협정이 유효하게 될 때까지 차를 시행함. 현재 재고중인 구조재건물자 우는 금후 수취할

구조재건물자를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하는 범위내에서 여사한 이양은 점차로 질서있게 차를 행하며, 대한민국정부는 미국공급물자의 접수, 할당, 배급 우 회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함. 재조선미군정청 우는 남조선과도정부가 불하한 구조재건물자의 원화순매상금 급 수취계정은 차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대한민국정부는 여사한 매상금을 조선은행의 특별당좌에 대한민국정부명의로 예금하기로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한 구조재건물자 우는 금후에 이양할 구조재건물자의 일절불하에 의한 매상금을 본 특별당좌에 예금하기로 협약함. 해당좌에서의 지출은, 대한민국정부 우는 재한미국최고대표 간에 동의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함.

미국무성 해외물자청산위원회에서, 과잉재산으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의 불하에 의한 한국원화 순매상금 급 수취계정은 자에 차를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제 2 조

미국정부는 1945년 9월 9일부터 본협정 유효기간까지의 기간에, 한국민간경제를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일절의 물자와 해기간중 일본에 수출한 한국물자와의 차액에 관하여 청산을 완료할 것을 협약함.

제 3 조

미국정부는 1945년 8월 9일 이후 독일 우는 독일인, 독일회사, 조합, 협의 우는 기타 독일단체가, 직접 우는 간접으로, 전체적 우는 부분적으로 소유 우는 관리 하였던 재한국재산을 자에 미국정부 관하로부터 대한민국정부 관하로 이관함.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이 불란서공화국 급 영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데로, 재한국 독일재산의 이관을 촉진하기에 필요한 일절 수단을 취할 것을 협약함.

제 4 조

미국정부는 재조선 미군정청이 현재 소유보관하고 있는 조선환금은행주식을 해은행의 전자산 급 채무와 함께, 자에 대한민국정부에 양도함. 미국정부는 현재 해은행이 남조선과도정부의 채권이 되어있는 외국환금의 순차인잔고를 자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단, 해금액은 재한미국정부 최고대표와 협의하여 동의한 후에야, 차를 할당 우는 사용함을 득함. 현행외국환금관리는,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에 다시 협정이 있을 때까지 차를 대한민국정부가 담당함.

제 5 조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된 전 일본인 공유 우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재조선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을 승인하고 비준함. 본협정 제1조 급 제9조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취득 우는 사용할 재산에 관한 보류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불하치 않은 귀속재산, 귀속재산의 임대차 급 불하

에 의한 순수입금의 소비되지 않은 금액은, 일절의 수취계정 급 매매계약과 함께, 차를 좌와 여히 대한민국정부에 이양함.

(가) 일절의 현금, 은행예금 우는 기타유동재산은 자에, 본협정유효기일부로 차를 이양함.

(나) 기타일절의 이양할 귀속재산, 일절의 입수가능한 재산목록, 도면, 증서 우는 기타 소유증은 대차대조표, 운영명세표 급 기타 귀속재산에 관한 재정기록에 의하여 확증되는 데로 질서 있는 이양이 가능한한, 가급적 속히, 차를 대한민국 정부에 점차로 이양함. 대한민국정부는 한국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좌기 재산을 접수 급 관리할 별개의 정부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함.

우에 좌기 재산이라 함은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현재까지 귀속되어, 본조 규정에 대한민국의 정부에 이양되는 재산 또는 금후에 이양될 재산을 지칭함.

대한민국정부는 일본과 대전한 국가의 국민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한국내 전 일본인 재산상에 유하는 직접 우는 간접의 권리 급 이익을 존중, 보전 급 보호하되, 단 여사한 권리 이익은 법령 제33호 유효기일 전에 선의 이전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취득된 것임을 요함.

대한민국정부는, 본조에 언급한 재산의 귀속, 관리 급 처분에 관하여 발생한, 일절의 현재 급 미래의 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차에 인한 일절의 책임을 자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하며, 미국은 그 책임을 면함.

제 6 조

전시규정하에 이론정부가 압수, 몰수, 또는 가차압한 재한국연합국 국민재산 급 일본정부가 적산으로 취득한 기타인의 재한국 재산으로서, 제5조 규정하에 대한민국의 정부에 이양되는 재산은, 정당한 소유자가 적당한 기간내에 반환을 청구하므로 해소유자에게 반환할 시까지 대한민국정부가 차를 보호 급 보존함. 대한민국정부는 소유자 급 대한민국정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별도 처리를 정하지 않은 한,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일절의 재산을 반환하기로 공약함.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이 수립한 정책을 계승하여 명기 재산이, 해소유자의 관리하에 있지 아니한 기간중에, 해재산에 발생한 손해 우는 상실에 대한 배상을 소유자에게 지불할 것을 공약하되, 그 범위는 일본제국정부, 그 대행기관 우는 그 국민이 전쟁목적으로 압수, 몰수, 우는 가차압한 한인재산에 발생한 손해 우는 상실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지불하는 배상과 동등도임을 요함.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 유효기일전, 본조에 언급한 재산의 행정에 의하여 발생한 일절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미국정부로부터 자에 인수하며, 미국정부는 그 책임을 면함.

제 7 조

대한민국 및 미국정부는, 1945년 9월 9일부터, 본협정 유효기일까지에 한국정

제를 위하여 제공된 전력에 대하여, 재한국 소련당국에게 지불할 미불채무의 만족한 청산을 주선함에 있어서, 협력할 것을 협약함.

미국정부는, 언제나 미불채무의 공정한 대가에 관하여 소련 급 미국당국의 대표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해 채무를 청산하기로 협약함.

제 8 조

미국정부는,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한국경제로부터 재조선미국육군에 제공한 일절의 물자, 봉사 급 설비에 대하여, 공정한 미화대가를 재조선미군정청을 통하여 한국에 변상하였고, 해기간중, 재조선미국육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대한민국정부, 그 국민 우는 기타 개인 급 단체가, 미국정부, 그 직원 우는 대행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우는 금후에 제기할 각종각양의 청구권에 대하여, 공정한 미화대가를 재조선 미군정청을 통하여 한국에 변상하였음.

대한민국정부는, 전기 기간중 재조선미국육군이 사용하거나 우는 제공받는 일절의 물자 급 봉사에 대하여 또는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미국육군이 한국에 주둔한 결과로 대한민국정부, 그 대행기관, 그 국민, 우는 기타 개인 급 단체로부터 인수하여 후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할 것을 협약함. 대한민국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기지불이 수행된 것을 규정한 협정을 자에 승인 차 비준함.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운용자금'이라 칭하는 조선은행대월당좌에서 사용한 자급에 대하여, 일절채무를 미국정부로부터 인수하여, 미국정부로 하여금 그 책임을 면케함. 대한민국정부는, 재한미국육군사령관이 현재 '재조선미군정청운용자금기'라 칭하는 조선은행대월당좌에서 원화를 계속인출할 것을 협약하며, 동시에 미국정부는 한국경제로부터 취득한 일절의 물자 급 봉사 또는 해당좌에서 인출한 원화에 대하여 공정한 미화대가를 미화 우는 기타 미국재물로서 지불하기로 자에 협약함.

제 9 조

(가)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는 미국국무성해외물자청산위원회 급 재조선미군정청을 통하여 현재까지 한국경제에 제공한 재산 급 해재산의 불하에 의한 원화순매상금을 받았으므로, 차에 대하여 해재산의 공정한 대가를, 본조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미국정부에 지불하기로 협약하되 해금액은, 2천5백만불의 해당액을 초과치 아니함. 단 차금액은 재조선미군정청에 해재산을 이전한 해외물자청산위원회 기록에 표시된 바와 여함. 해재산의 공정한 대가총액의 미불차액에 대하여는, 1948년 7월 1일부터 년 2-3/8분의 이율로써 이식을 계산하고 매년 7월 1일에 차를 한국통화로 지불할 것이며, 제1차 지불기일은 1949년 7월 1일로 정함.

(나) 미군정부가 지정한 기일에, 그 지정한 금액으로써, 대한민국정부는 본조에 규정한 채무중에서, 당시만기된 차액의 전부 우는 일부와, 만기된 미불이식을, 한

국통화로 지불하되, 본조 (라)항규정에 의한 재산의 대가를 감하며 미국정부는 해채무중에 수취할 차액을 해통화의 미화해당액으로써 대방에 기입함. 미국정부가 우와 여히 수취한 통화일절은 본조 (다)항 규정에 의하여 차를 사용함.

(다)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는 좌와 여히 협약함. 본조 (나)항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수취할 한국통화 급 본조가 (가)항에 규정한 이식으로 미국정부가 수취할 한국통화는 한국내에서 차를 사용할 것이며, 미국정부의 한국내비용일절의 지불에 차를 사용함을 득함.

단, 기비용은 좌에 대한 비용을 포함함.

(1) 양정부가 상호 협정할 교육안

(2) 동산 우는 부동산, 유체 우는 무체임을 막론하고 미국정부가 관심을 가진 재한국재산 급 그 첨부물의 취득.

해재산은 최초에, 본협정의 보충에 열거한 재산을 포함함.

(라) 대한민국정부는, 본조 조건하에 미국정부가 상호협정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을 미국정부의 요구에 응하여 양도함.

여사한 재산의 소유권을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양도한 시에는 미국정부는 해재산에 대하여 협정한 공정불화가격을 본조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의 채권으로 계산함.

(마) 양정부간의 특별협정에 의한 별도규정이 없는 한,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게 본조(나)항 급 (라)항에 규정한다대로, 한국통화에 의한 지불 우는 재한국재산의 소유권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상 양자의 총액은 7월 1일 시작하는 단일 회계연도에 있어서 5백만불의 해당액 급 본조 (가)항에 규정한 만기미불이식을 초과하지 못함.

(바) 본협정조건하에 대한민국정부가 인수한 불화채무에 해당하는 원액은 대한민국정부 급 미국정부간의 상호협정에 의하여 차를 계산하되 그 계산은 매지불직전에 차를 행함. 경과여하를 불문하고, 원화해당액은 매지불행위 당시에 제3자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전을 대비하여, 미국정부에 불리하도록 계산치 못함.

제10조

대한민국정부는 본협정건하에 미국정부가 제공한 기구, 물자, 급 기타재산이 재수출 우는 전환을 허치 않기로 협약함. 단, 미국정부의 정당한 대표가 여사한 재수출 우는 전환을 인준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함.

제11조

대한민국정부는 재조선미군정청 또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일절의 현행 법률, 법령 급 규칙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을 협약함. 단, 대한민국정부가 차를 폐지 우는 개정하는 시는 차한에 부재함.

제12조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친선조약 급 통상조약에 관한 교섭이 있을 때까지 한국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연합국국민 급 회사의 권리 급 특전은 차를 존중하고 확인할 것을 협약함.

제13조

본협정조건하에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는 회계, 재산 급 운영설비의 행정적 관리는 본협정 유효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는 대한민국정부가 여사한 운영 급 책임을 인수할 준비가 되는대로, 가급적 속히 차를 대한민국정부당국에 점차로 질서있게 이양함. 단, 귀속재산 급 구조재건물자의 행정적관리는, 본협정 유효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우는 대한민국정부가 여사한 운영 급 책임을 인수할 준비가 되는대로 가급적 속히 차를 이양함.

제14조

재한미국육군이 한국에서 철퇴할 시까지 대한민국정부가 급 미국정부는 재한미국육군에 의한 특정운수, 통신, 기타 설비 급 봉사의 이용에 관하여, 재한미국육군 급 재조선미군정청 각부간에 이미 체결된 일절의 협정에 기속되며 차를 존중할 것을 협약함.

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통첩함과 동시에 발효함.

1948년 9월 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 본문 급 영어 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함.

대한민국대표 이 범 석 장 택 상

미국대표 John J. Muccio

2)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의 보충

북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약칭함) 정부 급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함) 정부간의 본협정은 본일부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의 보충이며, 한국에 제공한 과잉재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양도를 규정함.

한국 급 미국간의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9조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여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재한국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것이며,

우에 언급한 협정의 동조 (라)항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재산을 양정 부간에 협정된 가격으로 양도할 것을 협약하였으며,

미국은 위에 언급한 협정의 조건하에 양수키 원하는 재산을 이미 선택하였으므로 이에 아래와 같이 협정함.

(1) 한국은, 본협정 유효기일부터 60일전후에 좌기 재산을, 좌기 가격으로 미국에 양도함. 가격은 인정된 평정관 3인이 차를 결정하여 불화로 명시함. 평정관은 한국이 지명한 1인, 미국이 지명한 1인 급 양평정관이 최초로 선정된 위원장으로 구성됨. 재산은 좌기 재산을 포함하나 차에 국한되지 아니함.

(가) 미군가족주택 제10호 급 대지정동 1의 39, 1,362평

(나) 러시아인가옥 제1호 정동 1의 39, 720평

(다) 현재 미국영사관 서편공지 정동 1의 9, 1,414평

(라) 현재 미국영사관 남편공지 서울구락부재사에 이르기까지 현재 미국영사관 곁으로 통한 도로의 일부 정동 8의 1, 8의 3, 8의 4, 8의 5, 8의 6, 8의 7, 8의 8, 8의 9, 8의 10, 급 8의 17, 53,540평

(마) 미군가족주택 제10호 급 러시아인가옥 제1호 정동편에 있는 3각지형대지 급 기대지상에 있는 창고 1동 가옥 3동 급 기타 건물 서대문구 정동 1의 39, 1,675평

(바) 전군정청 제2지구전부 급 기대지상에 있는, 약 43동의 가옥 급 기타 건물 차는, 차지역에 있는 식산은행 소유재산 전부를 포함함. 송현동 49의 1 전부. 사간동의 96, 97의 2, 98, 99, 102, 103의 1, 104의 1, 급 104의 2, 급 기대지상의 기타 건물 약 9,915평

(사) 반도호텔 급 기동편에 연접한 주차장 종로구 을지로 180의 2, 1,944평

우증거로서, 하기 서명인은 각자정부가 부여한 권한에 의하여 1948년 9월 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협정에 서명함. 한국어 본문 급 영어 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본문에 의함.

대한민국대표 이 범 석 장 택 상

미국대표 John J. Muccio

3) 부 록 (갑)

대한민국정부가 미국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차용케 할 재산은 좌기 재산을 포함하나 차에 국한되지 않음.

(가) 군용지대 제1, 제2 급 제7호내에 있는 특정가옥 제1동 급 대지

(나) 각호에 산재한 미인가족주택 제9호, 제109호, 제143호, 제218호, 제221호 급 미군숙사 제5호, 제10호 급 제11호

(다) 반도호텔 월편에 있는 삼정빨 급 대지

(라) 미공보관 급 대지(전수도청빨딩)

(마) 제24군단 특무대지구

(바) 남대문근처에 있는 제216보급대용 콘크리트제식고

(사) 미군 제7사단지구(서빙고)에 있는 56동의 가옥 급 대지

(아) 중앙청지구내에 있는 57동의 가옥

(자) 미군숙사 제32호(국제호텔) 급 미군숙사 제24호(수도호텔)

(차) 미군숙사 제23호(내자아파트)의 3동건물

(카) 미군숙사 제38호(프라자호텔)

(타) 영등포 미인가족주택지대 제1지구의 사용가옥 8동 급 15동의 아파트

2. 대전협정(1950년)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서명 : 1050. 7. 12.

발효 : 1950. 7. 12.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로 송부된 서한

1950년 7월 12일

주한미국 대사관

한국 대전

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올리는 바이며 또한 미국군대(단 1950년 1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협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주한 미국 군사 고문단은 제외함)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각기의 권리 의무 및 관할권상의 한계를 정의 내지 규정하는 정식 협정이 체결하므로 주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은 미국군법회의에 의하여 행사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또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구속은 한국인의 미국군대 또는 그의 구성원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한국인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여사한 자는 가급적으로 속히 대한민국의 '민간'관현에게 인도될 것입니다.

외무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내에 북한인 침투하는 등의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국군대 이외의 여하한 기관의 관할에도 복종하거나 또는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는 바를 양해하실 것입니다.

지방재판소의 부존으로 인하여 요청이 있지 않는 한 미국군대의 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대사관으로서 외무부에서 대한민국정부를 대신하여 재한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전기, 요구조건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로부터 미국대사관에게 송부한 서한

대한민국 외무부

대전 1950년 7월 12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미국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올리고 또한 대전에서의 동대사관의 1950년 7월 12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당부는 1950년 7월 12일자 귀 대사관의 서한중에서 언급된 다음과 같은 제의를 이의없이 수락하는 바를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즉

(1) 미군 군법회의는 재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배타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2) 한국인이 미국군대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범하였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미국군대에 의한 한국인의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여사한 자는 가급적을 속히 대한민국 민간관현에게 인도된다.

그리고

(3) 외무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국군대는 미국군대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수 없으며 또한 미국군대의 재판소는 지방재판소의 부존재로 인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를 양해한다.

대한민국 외무부

대전

3.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서명 : 1953. 10. 1
발효 : 1954. 11. 18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독립하여 있다는 각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세력을 공고히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의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

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와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공고한 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와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으로 두벌로 작성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딜러스

4. 한-미 SOFA(1966년)

1) 본협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서명 : 1966. 7. 9

발효 : 1967. 2. 9

아메리카 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면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내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은 양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정의

본 협정에 있어서,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 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을 제외한다.

(나)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 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본 협정의 적용에 관한 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이중국적자로서 합중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는 합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

(다)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및 21미만의 자녀,

(2)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

용을 공여받는다. 개개의 시설과 구역에 관한 제협정은 본 협정 제28조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체결해야 한다.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사실과 구역의 운용에 사용되는 현재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나) 본 협정의 효력 발생시에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 및 합중국 군대가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재사용할 때에 합중국의 군대가 이를 재사용한다는 유보권을 가진 채 대한민국에 반환한 시설과 구역은, 전기(前記) (가)항에 따라 양정부간에 합의된 시설과 구역으로 간주한다. 합중국의 군대가 사용하고 있거나 재사용을 가지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기록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후에도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보존한다.

2.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의 정부는, 어느 일방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러한 협정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이나 그 일부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새로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3.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합중국은 그와 같이 반환한다는 견지에서 동시설과 구역의 필요성을 계속 검토할 것에 동의한다.

4. (가) 시설과 구역이 일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러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잠정적으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을 사용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사용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동시설과 구역의 정상적인 사용 목적에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양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사용할 시설과 구역에 관하여는, 합동위원회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관한 협정중에 본 협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계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

1.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한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

한 양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前記)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가) 합중국, 대한민국의 영역으로의, 영역으로부터의 또는 영역안의 항해, 항공, 통신 및 육상 교통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한다.

(나) 전자파 방사 장치용 라디오 주파수 또는 아예 유사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 통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양정부의 지정 통신 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계속 해결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법령과 협정의 범위내에서, 전자파 방사에 민감한 장치, 전기통신 장치, 또는 합중국의 군대가 필요로 하는 기타 장치에 대한 방해 를 방지하거나 제거시키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1.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시설과 구역에 가하여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유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와의 특별한 약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건설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간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

1. 합중국 군대의 대한민국 정부 또는 그 지방 행정 기관이 소유, 관리 또는 규제하는 모든 공익사업과 용역을 이용한다. "공익사업과 용역"이라 함은 수송과 통신의 시설 및 기관, 전기, 가스, 수도, 스팀, 전열, 동력 및 하수오염처리를 포함 하되, 이것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 항에 규정된 공익사업과 용역을 운영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前記)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동 정부의 공익사업과 용역의 운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2. 합중국에 의한 이러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다른 이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제8조 출입국

1. 본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정부간 에 합의될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받는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안 에서 영구적인 거소 또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3. 합중국 군대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의 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가) 성명, 생년월일, 계급과 군번 군의 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신분증명서 및 (나) 개인 또는 집단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 및 명령받은 여행을 증명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여행의 명령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그들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기(前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동신분증명서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이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군속, 그들의 가족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가족은 합중국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문서를 소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함에 있어서 또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동안, 그들의 신분이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그 신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기(前記) 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그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송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6.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을 그 영역으로부터 이송시킬 것을 요청하거나 합중국 군대의 전구성원 또는 전군속에 대하여, 또는 이러한 군대 구성원, 군속, 전구성원 또는 전군속들의 가족에 대하여 추방명령을 한 경우에는, 합중국 당국은 그자를 자국의 영역안에 받아들이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자를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는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의 자격으로, 또는 그러한 자가 될 목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자 및 이러한 자의 가족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제9조 통관과 관세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동군대의 공인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가 합중국 군대의 공용을 위하여거나 또한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모든 자재, 수용품 및 비품과 합중국 군대가 적용할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반입에는 환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전기(前記)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 또는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최종적으로 합체될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있어서는, 합중국 군대가 전기(前記)의 목적을 위하여 수령할 뜻이 적당한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본 항에서는 규정된 면제는 합중국 군대가 동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도 적용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탁송되고 또한 이러한 자들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또한, 그들의 가족이 이러한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과 동거하기 위하여 최초로 도착한 때에, 사용을 위하여 수입한 가구, 가정용품 및 개인용품,

(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이 자기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차량과 부속품,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을 위하여 합중국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하는 것.

4. 제2항 및 제3항에서 허용한 면제는, 물품 수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또한 당해 물품의 반입시에 관세와 내국 소비세가 이미 징수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관 당국이 징수한 관세와 내국 소비세를 환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가) 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나) 공용의 봉인이 있는 공문서 및 공용의 우편 봉인이 있고 합중국 군사 우편 경로에 잇는 제1종 서장,

(다) 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 화물.

6. 관세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의 면제로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대한민국에 수입된 물품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고 재수출할 수 있다.

8.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당국과 협력하여 본 조의 규정에 따라 합중국 군대, 동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집행하는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실시 및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압류될 물품을 인도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합중국의 군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이 납부할 관세, 조세 및 벌금의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합중국 군대 당국은 세관 검사의 목적으로 군사상 통제하는 부두와 비행장에 파견된 세관 직원에게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합중국 군대에 속하는 차량 및 물품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관세 또는 재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세관 당국이 압류한 것은, 관계 부대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의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한 면적 부여되지 아니한 화물 또는 여객이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하고, 그 화물 또는 여객의 대한민국의 출입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선박과 항공기, 기갑 차량을 포함한 합중국 정부 소유의 차량 및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 출입하고, 이들 시설과 구역간을 이동하고, 또한 이러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 간을 이동할 수 있다. 합중국의 군용 차량의 시설과 구역에의 출입 및 이들 시설과 구역간의 이동에는 도로 사용료 및 기타의 과징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선박이 대한민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상적인 상태하에서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박은 강제 도선이 면제되나, 도선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율의 도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상 업무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의 약정에 따라 다음의 기상 업무를 합중국 군대에 제공함을 약속한다.

- (가) 선박에 의한 관측을 포함한 지상 및 해상에서의 기상 관측,
- (나) 정기적 개항과 가능하다면 과거의 자료도 포함한 기상 자료,
- (다) 기상 정보를 보도하는 전기하는 전기 통신 업무,
- (라) 지진 관측의 자료.

제12조 항공 교통 관제 및 운항 보조 시설

1. 모든 민간 및 군용 항공 교통 관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발달을 이룩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영상 필요한 범위까지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조 및 통합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이에 대한 추후의 변경은 양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성립되는 약정에 의하여 설정된다.

2. 합중국은 대한민국 전역과 그 영역에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 보조 시설(소요되는 바에 따라 사각형과 전자형)을 설치, 건립 및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운항 보조 시설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체계에 대체로 합치하여야 한다.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한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은 동 보조 시설의 위치와 특징을 적절히 상호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보조 시설을 변경하거나 부가적인 운항 보조 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가능한 한 사전 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

1. (가) 합중국 군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판매점, 식당, 사교클럽, 극장, 신문 및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제기관은,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아니한다.

(나) 합중국 군당국이 공인하는 규제하는 신문이 일반 대중에 판매되는 때에는, 그 배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한 이와 유사한 관리를 받는다.

2. 이러한 제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 제1항 (나)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제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안에서의 구입에는, 양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3. 이러한 제기관이 판매하는 물품은 대한민국 및 합중국의 당국이 상호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기관으로부터의 구입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 규정된 제기관은, 합동위원회에서의 양정부 대표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 조세 당국에 대한민국 세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세

1.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이들이 제13조에 규정된 제 기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과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에서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과세 기관에 대하여서도 어떠한 대한민국의 조세도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을,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 항 첫 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합중국 시민에 대하여는 소득에 대한 대한민국 조세의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한 무채재산권의 보유, 사용 및 이들 상호간의 이전 또는 사망에 의한 이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받는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 투자를 위하여거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어떠한 무채재산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초청계약자

1. (가) 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 (나) 통상적으로 합중국에 거주하는 그의 고용원 및 (다) 전기(前記)한 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 또는 동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가 하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는, 본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전기(前記) 제1항에 규정된 지정은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안정상의 고려, 관계 업자의 기술상의 적격요건, 합중국의 표준에 합치하는 자재 또는 용역의 결여 또는 합중국의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그 지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를 위한 합중국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때,

(나) 이러한 자가 합중국 군대 또는 동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 관계의 사업활동 이외의 사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다)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위법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때.

3. 이러한 자는, 그의 신분에 관한 합중국 관계 당국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본 협정상의 다음의 이익이 부여된다.

(가)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출입 및 이동,

(나)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에의 입국,

(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면제,

(라)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3조에 규정된 기관의 용역이용,

(마)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것,

(바)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제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 군표의 사용,

(사) 제20조에 규정된 우편시설의 이용,

(아) 공익사업과 용역에 관하여, 제6조에 의하여 합중국 군대에 부여되는 우선권, 조건, 사용료나 요금에 따르는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

(자) 고용 조건 및 사업과 법인의 면허와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의 면제.

4. 이러한 자의 도착, 출발 및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의 거소는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당국에 이를 수시로 통고하여야 한다.

5. 이러한 자가 제1항에 규정된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보유하고 사용하며 또한 이전하는 감가상각자산(가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조세 및 이와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이러한 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에 기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동산 또는 무채재산권의 보유, 사용, 사망에 의한 이전 또는 본 협정에 따라 면제받는 권리를 가지는 개인 또는 기관에의 이전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면제는 대한민국내에서 투자를 위하여거나 기타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 또는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어떠한 무채재산에도 적

용되지 아니한다.

7. 이러한 자는, 본 협정에 규정된 어느 것의 시설이나 구역의 건설, 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합중국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의 과세기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대한민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과세 기관에 어떠한 대한민국 조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자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대한민국 조세의 부과상 대한민국에 거소나 주소를 가지는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항의 규정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 항의 첫 단에 규정된 원천 이외의 대한민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합중국의 소득세 때문에 대한민국 거소가 있다고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조세 납부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8. 대한민국 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의 이러한 자의 역할을 인정하여 그들은 제22조 제5항, 제7항 (나), 제9항 및 동관계 합의의사록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은 조속히 합중국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이러한 통고를 접수하면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바에 따라 전기(前記)의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현지 조달

1. 합중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거나 본 협정에서 인정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서 공급 또는 제공될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건축공사를 포함한다)의 조달을 위하여 계약자, 공급자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선택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양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2. 합중국 군대의 유지를 위하여 현지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으로서 그 조달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의 조정하에, 또한 요망되는 경과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을 통하여 그 원조를 얻어 조달되어야 한다.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후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

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 (가) 물품세
- (나) 통행세
- (다) 석유류세
- (라) 전기「가스」세
- (마) 영업세

양국 정부는 본조에 명시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현재 또는 종래의 조세로서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조달되거나 최종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총구입가격의 상당한 부분 및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루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본조의 목적에 합치하는 면세 또는 감세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4.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5. 제3항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구입한 물품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당국이 상호간에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처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물품을 면세로 구입하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노무

1. 본조에 있어서

(가) “고용주”라 함은 합중국 군대(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 및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나) “고용원”이라 함은 고용주가 고용한 군속이나 제15조에 규정된 계약자의 고용원이 아닌 민간인을 말한다. 다만, (1) 한국노무단(「케이·에스·씨」)의 구성원 및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 또는 그들의 가족의 개인이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제외된다. 이러한 고용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2. 고용주는 그들의 인원을 모집하고 고용하며 관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모집사무 기관은 가능한 한 이용된다. 고용주가 고용원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노동행정상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노동청에 제공한다.

3. 본조의 규정과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합중국 군대가 그들의 고용원을 위하여 설정한 고용조건, 배상 및 노사관계는 대한민국의 노동법령의 諸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가) 고용주와 고용원이나 승인된 고용원 단체간의 쟁의로서, 합중국 군대의 不平處理 또는 노동관계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 노동법령 중 단체행동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1) 쟁의는 조정을 위하여 대한민국 노동청에 회부되어야 한다.

(2) 그 쟁의가 전기 (1)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합동위원회에 회부되며, 또한 합동위원회는 새로운 조정에 노력하고자 그가 지정하는 특별위원회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3) 그 쟁의가 전기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는 신속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는 확증하에 그 쟁의를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4) 어느 승인된 고용원 단체 또는 고용원이 어느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절차의 진행중 정당한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종사함은 전기 단체의 승인철회 및 그 고용원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로 간주된다.

(5) 고용원단체나 고용원은 쟁의가 전기 (2)에 규정된 합동위원회에 회부된 후 적어도 7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한 업무요건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고용원 또는 고용원단체는 노동쟁의가 전기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속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다만, 합동위원회가 이러한 행동이 대한민국의 공동방위를 위한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본초의 적용은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박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 당국과의 협의하에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비상조치에 따라 제한된다.

5. (가) 대한민국이 노동력을 배정할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가지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배정 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나) 전쟁, 적대행위 또는 전쟁이나 적대행위가 절 한 상태와 같은 국가 비상시에는 합중국 군대의 임무에 긴요한 기술을 습득한 고용원은 합중국 군대의 요청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이나 또는 기타 강제복무가 연기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대는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고용원의 명단을 대한민국에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6. 군속은 그들의 임용과 고용조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諸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8조 외환관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에 따라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합중국 “불” 또는 “불”증권으로서, 합중국의 공급인 것 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본 협정과 관련하여 근무하거나 고용된 결과로서 취득한 것 또는 이러한 자와 그들의 가족이 대한민국밖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것의 대한민국으로의 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이전을 막는 것으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3. 합중국 당국은 전항에 규정된 특권의 남용 또는 대한민국의 외환관리의 회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군표

1. (가) “불”로 표시된 합중국 군표는 합중국에 의하여 인가받은 자 그들 상호간의 거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합중국의 정부는, 합중국의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받은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가받지 아니한 자가 군표를 사용하는 거래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합중국 당국의 원조를 얻어, 군표의 위조 또는 위조 군표의 사용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에 따르는 자를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나) 합중국 당국은, 합중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인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표를 행사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체포하고 처벌할 것을 합의하며, 또한 대한민국 안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의 결과로서, 합중국이나 그 기간이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대한민국 정부나 그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키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2. 합중국은, 군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감독하에 합중국에 의하여 군표 사용을 인가받은 자의 사용을 위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일정한 아메리카의 금융기관은, 이러한 시설을 당해 기관의 대한민국의 상업금융체로부터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하고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을 유일의 임무로 하는 직원을 둔다. 이러한 시설을 합중국 통화에 의한 은행계정을 유지하고 또한 이러한 계정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본 협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범위내

에서의 자금의 수령 및 송금을 포함한다)를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20조 군사우체국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사우체국간 및 이러한 군사우체국과 기타 합중국 우체국간에 있어서의 우편물의 송달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안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이용하는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회계 절차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 거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회계 절차를 위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합의한다.

제22조 형사재판권

1.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조건으로,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가)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상, 국가의 안전에 관한 범죄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당해국에 대한 반역,

(2) 방해 행위(sabotage), 간첩 행위 또는 당해국의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의 위반.

3.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 합중국 군당국은, 다음의 범죄에 관하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합중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합중국 군대의 타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관한 범죄,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act or omission)에 의한 범죄.

(나) 기타의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히 타방 국가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의 당국은, 타방 국가가 이러한 권리 포기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타방 국가의 당국으로부터 그 권리 포기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4. 본 조의 전기(前記) 제규정은 합중국 군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뜻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의 군당국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합중국의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금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의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사법 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라) 제2항 (다)에 규정된 오로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피의자는 대한민국 당국의 구금하에 두어야 한다.

6. (가)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당국은, 범죄에 대한 모든 필요한 수사, 실시 및 증거의 수집과 제출(범죄에 관련된 물건의 압수 및 상당한 경우에는 그의 인도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을 인도를 하는 당국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부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할 수 있다.

(나)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모든 사건의 처리를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

7. (가) 사형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이 같은 경우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선고한 자유형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구금 인도를 합중국 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구금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합중국은 구금형의 복역이 종료되거나 또는 이러한 구금으로부터의 석방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합중국의 적당한 구금/시설안에서 그 개인의 구금을 계속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경우에,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관계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을 합중국과의 구금 시설 안에서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과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8. 피고인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이나 합중국 군당국 중의 어느 일방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또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거나 복역을 종료하였을 때 또는 그의 형이 감형되었거나 집행 정지되었을 때 또는 사면되었을 때에는, 그 피고인은 타방 국가 당

국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재판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항의 어떠한 규정도, 합중국 군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을 그 자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범죄를 구성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군기 위반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9.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나) 공판전에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 사실의 통지를 받을 권리,

(다) 자신에 불리한 증인과 대면하고 그를 심문할 권리,

(라) 증인이 대한민국의 관할내에 있는 때에는, 자신을 위하여 강제적 정차에 의하여 증인을 구할 권리,

(마)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자기가 선택하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또는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저건에 따라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의 보조를 받는 변호인을 가질 권리,

(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10. (가) 합중국 군대의 정규 편성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대의 군사 경찰은 동시설 및 구역안에서 질서 및 안전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이러한 시설 및 구역밖에서는 전기(前記)의 군사 경찰은, 반드시 대한민국 당국과의 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연결하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행사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간의 규율과 질서의 유지 및 그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11.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재판권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정지되고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12. 본 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전에 어떠한 범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1950년 7월 12일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협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청구권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소유하고 자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가) 손해가 타방 당사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의하여 그의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경우, 또는

(나) 손해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사용하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으로부터 일어난 경우, 다만, 손해를 일으킨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을 때, 또는 손해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일어났을 때에만 한한다.

해난 구조에 관한 일방 당사국의 타방 당사국에 대한 청구권은, 이를 포기한다. 다만, 구조된 선박이나 선하가, 타방 당사국이 소유하고 동국의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사용중이던 경우에 한한다.

2. (가) 제1항에 규정된 손해가 어느 일방 당사국이 소유하는 기타 재산에 일어난 경우에는 양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 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정되는 일인의 중재인이 타방 당사국의 책임문제를 결정하고 또한 손해액을 사정한다. 이 중재인은 또한 동일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반대의 청구도 재정한다.

(나) 전기(前記) (가)에서 규정된 중재인은 양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관계의 상급 지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다) 중재인이 행한 재정은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 중재인이 재정한 모든 배상금은 본 조 제5항 (마)의 (1), (2) 및 (3)의 규정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마) 중재인의 보수는 양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양정부가 중재인의 임무 수행에 따르는 필요한 비용과 함께 균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이를 지급한다.

(바) 각 당사국은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일천사백 합중국불(\$1,400) 또는 대한민국 통화로 이에 해당하는 액수(청구가 제기된 때에 제18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환율에 의한다.)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각기 청구권을 포기한다.

3.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상, 선박에 관하여 "당사국의 소유"라 함은, 그 당사국이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나선 조건으로 징발한 선박 또는 나포한 선박을 포함한다.(다만, 손실의 위험 또는 책임에 당해 당사국 이외의 자에 의하여 부담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의 공무집행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에 입은 부상이나 사면에 관한 타방 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5. 공무집행중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

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및 본 조 제6항이나 제7항의 적용을 받는 청구권은 제외된다)은, 대한민국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가) 청구는 대한민국의 군대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제기하고 심사하여 해결하거나 또는 재판한다.

(나) 대한민국은 전기(前記)한 어떠한 청구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합의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지급은 대한민국이 '원'화로써 이를 행한다.

(다) 이러한 지급(합의에 의한 해결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재판에 따라 행하여지거나 불문한다)이나 또는 지급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전기(前記)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다.

(라) 대한민국이 지급한 각 청구는, 그 명세 및 하기 (마)의 (1) 및 (2)의 규정에 의한 분담안과 함께, 합중국의 관계 당국에 통지한다. 2개월 이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분담안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전기(前記) (가) 내지 (라)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충족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양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합중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를, 합중국이 그의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양 당사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손해가 대한민국 군대나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일어나고 그 손해를 리들 군대의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책임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 배상금액 및 비율에 의한 분담안에 대하여 양국 정부가 인정한 각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6개월 기간에 지급한 금액의 명세서는, 변상요구서와 함께, 매 6개월마다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이를 송부한다. 이러한 변상은 가능한 최단시일내에 '원'화로써 하여야한다. 본 항에 규정된 양국 정부의 인정은, 제2항 (다) 및 제5항 (다)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중재인에 의한 어떠한 결정이나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법원에 의한 판결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바)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포함한다.)은 그들의 공무집행으로부터 일어난 사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사) 본 항의 규정은, 전기(前記) (마)의 규정이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청구권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선박의 항해나 운용 또는 화물의 선적, 운송이나 양륙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대한민국 안에서 불법한 작위 또는 고용원(대한민국의 국민인 고용원 또는 대한민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고용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의 방법으로 이를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 당국은, 피해자의 행동을 포함한 당해 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심사하고 청구인에 대한 배상금을 사정하며, 그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그 보고서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송부되며, 합중국 당국은 지체없이 보상금 지급의 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제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정한다.

(다) 보상금 지급의 제의가 행하여진 경우, 청구인이 그 청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락하는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정 및 지급한 금액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한다.

(라) 본 항의 규정은, 청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지급이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소송을 수리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7. 합중국 군대 차량의 허가받지 아니한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은, 합중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 제6항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8.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불법적인 작위나 부작위가 공무집행중에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 또는 합중국 군대의 차량 사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문제는 본 조 제2항 (나)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중재인에게 회부하며, 이 점에 관한 동중재인의 재정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이다.

9. (가) 합중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재판권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의 공무집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판결의 집행 절차에 관한 경우, 또는 청구를 완전히 충

족시키는 지급을 한 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고용원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안에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한 강제 집행에 따른 사유동산(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동산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재산이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도록 그의 권한 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한다.

(다)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당국은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한 청구의 공평한 처리를 위한 증거의 수집에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10. 합중국 군대에 의한 또는 동 군대를 위한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그 계약 당사자에 의해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은, 조정을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 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11. 본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비전투 행위에 부수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만 적용한다.

12.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 증원 군대(카투사)의 구성원은 본 조의 적용상,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13. 본 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청구권은 합중국 당국이 이를 처리하고 해결한다.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

1.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허가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군의 운전허가증을 운전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

2. 합중국 군대 및 군속의 공용 차량은 명확한 번호표 또는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호를 붙여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사용 차량을 면허하고 등록한다. 이러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 및 동 차량의 면허와 등록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령이 요구하는 기타 관계 자료는 합중국 정부 직원이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를 제공한다. 면허 감찰 발급의 실비를 제외하고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차량의 면허, 등록 또는 운행에 관련된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의 납부가 면제되며, 또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관련된 모든 조세의 납부가 면제된다.

제25조 보안 조치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수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합중국의 설비, 비품, 재산, 기록 및 공무상의 정보의 적의한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입법 조치와 기타 조치를 취하며, 또한 제22조에 따라 대한민국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범법자의 처벌을 보장하기로 동의한다.

제26조 보건과 위생

합중국 군대,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합중국의 권리와 병행하여, 질병의 관리와 예방 및 기타 공중보건, 의료, 위생과 수의업무의 조정에 관한 공동관심사는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이를 해결한다.

제27조 예비역의 훈련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적격의 합중국 시민을 대한민국에서 예비역 군대로 편입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다.

제28조 합동위원회

1.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상호 협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의 기관으로서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합동위원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중국의 사용에 소요되는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 기관으로서 역할 한다.

2.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합중국 정부 대표 1명으로 구성하고, 각 대표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대리인과 직원단을 둔다. 합동위원회는 그 자체의 절차 규칙을 정하고, 또한 필요한 보조기관과 사무기관을 설치한다.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또는 합중국 정부 중의 어느 일방 정부 대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때라도 즉시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3. 합동위원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때에는, 동 위원회는 이 문제를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그 이상이 검토를 강구하기 위하여 각기 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협정의 효력 발생

1. 본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합중국 정부에 대하여 동협정이 대한민국이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서면 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

3. 제22조 제12항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본 협정은 동협정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1950.7.12.자 대전에서 각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된 재판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을 폐기하고 이에 대치한다.

4. 1952.5.24.자 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제3조 제13항은,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 또는 그들의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0조 협정의 개정

어느 일방 정부든지, 본 협정의 어느 조항에 대한 개정을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국 정부는 적절한 경로를 통한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31조 협정의 유효 기간

본 협정 및 본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히 정문이나,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1966.7.9. 서울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동 원

민 복 기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하여

던 러스크

윈드롭 지. 브리운

2) 합의의사록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서명 : 1966. 7. 9
발효 : 1967. 2. 9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 합중국 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교섭에 있어서 이루어진 다음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제1조

(나)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에서 공급할 수 없는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제3국의 국민인 자는 합중국에 의한 고용만을 위하여 합중국 군대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음을 양해한다. 이러한 자와 제3국의 국민으로서 본 협정이 효력 발생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군대를 동반하는 자는 군속으로 간주한다.

제3조

비상시의 경우에 합중국 군대는 시설과 구역의 주변에서 동군대의 경호와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합의한다.

제4조

1.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합중국의 경비로 건립되었거나 건축된 모든 이동 가능한 시설 및 시설과 구역의 건축, 확장, 운영, 유지, 경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합중국에 의하여 또는 합중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도입되었거나 또는 대한민국에서 조달된 모든 비품, 자재 및 수용품은 계속, 합중국의 재산으로 되며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시킬 수 있다.

2.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공되고 또한 본 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이동 가능한 모든 시설, 비품 및 자재 또는 그 일부는 그들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6조

1. 합중국 군대에 적용할 수 있는 우선권, 조건 및 사용료나 요금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결정한 변경은 그 효력 발생일 전에 합동위원회의 협의대상이 될

것임을 양해한다.

2. 본 조는 1958.12.18.자 공익물에 관한 청구권 청산을 위한 협정을 어느 의미로나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동협정은 양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비상시에는, 대한민국은 합중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8조

1. 제3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법령집행 기관원(예컨대, 육군헌병, 해군헌병, 공군헌병, 특별수사대, 범죄수사대 및 방첩대)으로서 대한민국에서 군사경찰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소지자의 성명, 지위, 및 그가 법령집행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양국어로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다. 동신분증명서는 그 소지자의 공무집행중 관계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합중국 군대는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증명서의 양식과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각종 제복의 규모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한다.

3. 제3항의 종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되 이를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할 필요가 없음을 말한다.

4. 제5항에 의거한 신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합중국 당국이 지는 제6항에 의한 책임은 제5항에 의거한 통고가 대한민국 당국에 전달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추방 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제9조

1. 합중국 군대의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와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의 사용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한 물품의 양은 이러한 사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한도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3항 (가)는, 화물의 선적과 소유자의 여행이 동시에 행하여져야 할 것을 요하거나 또는 적하나 선적이 1회이어야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최초로 도착한 말로부터 6개월 동안에는 합리적인 양의 가구, 개인용품과 가정용품을 관세의 부과없이 수입할 수 있다.

3. 제5항 (다)에 규정된 '군사화물'이라 함은, 무기 및 비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합중국 군대(동군대의 공인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자금기관을 포함한다)에 탁송된 모든 화물을 말한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관한 적절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된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4. 합중국 군대는, 대한민국에의 반입이 대한민국의 관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물품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 의하여 또는 이러한 자를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합중국 군대는 이러한 물품의 반입이 발견된 때에는 언제든지 신속히 그 뜻을 대한민국 세관 당국에 통지한다.

5.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한 물품의 반입에 관련되는 남용 또는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합중국 군대 당국에 대하여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9항 (나) 및 (다)에 규정된 '합중국 군대는 그의 권한내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라 함은, 합중국 군대에 의한 합리적이며 실행가능한 조치를 말한다.

7.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면세대우는 합중국 정부가 공포할 규칙에 따라 판매소와 비세출자금기관이 제13조 및 동조의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개인과 기관에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한 자재, 수용품, 및 비매품에 적용하기로 양해한다.

제10조

1.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위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반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라 함은 공용선박과 용선(나용선 계약, 운송 계약 및 시간 계약)을 말한다. 일부 용선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용화물과 사인인 여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기(前記)선박에 의하여 운송된다.

2. 본 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항구라 함은, 통상 "개항(open ports)"을 말한다.

3. 제3항에 규정된 '적절한 통고'의 면제는, 이러한 통고가 합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특별히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12조

합중국 군대가 선박과 항공기의 항구적인 운항 보조 시설을 동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밖에 설치할 때에는 제3조 p1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

합중국 군대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제기관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가) 통상적으로 미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및 직원, (나) 합중국 군대로부터 군수 지원을 받는 통합사령부 산하 주한

외국 군대 및 그 구성원,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그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목적이 합중국 정부에 의하여 재정적 지원을 받는 계약 용역의 이행만을 위한 자, (라) 미적십자사, USO(United Service Organizations)와 같은, 주로 합중국 군대의 이익이나 용역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관 및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직원, (마) 전 각호에 규정된 자의 가족 및 (바) 대한민국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기타 개인과 기관.

제15조

1. 제15조 제1항에 명시된 것에 부가하여 합중국과의 계약의 이행은 제15조에 규정된 자를 본 조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

2. 계약자의 고용인으로서,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합중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없다면 제15조에 포함된 특권을 향유할 자는, 그들의 체류 목적이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부합하는 동안에 한하여 이러한 특권을 가진다.

제16조

1. 합중국 군대는, 동 군대의 대한민국에서의 조달 계획에 있어서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 등에 관하여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적절한 정보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경제관계 법령과 상관행의 차이에서 생기는 조달계약에 관한 곤란한 점을 만조가게 해결하는 문제는, 합동위원회 또는 기타 적당한 대표들이 이를 연구한다.

3. 합중국 군대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려는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 과세의 면제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합중국 군대 앞으로 탁송되거나 송부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이 합중국 군대의 감독하에 제5조에 규정된 시설과 구역의 구조,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한 계약, 또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지원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될 것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당해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시설에 최종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적절한 증명을 합중국 군대가 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대의 권한있는 대표가 생산자로부터 직접 당해 자재, 수용품, 비품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 징수는 정지된다.

(나) 합중국 군대의 공인된 대표는 대한민국 당국에 대하여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다) 이러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는 다음의 시기까지 정지된다.

(1) 합중국 군대가 전기(前記)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소비한 양과 정도를 확인하고 입증하는 때, 또는

(2) 합중국 군대가 전기(前記)의 자재, 수용품 및 비품으로서 동 군대가 사용하는 물품이나 시설에 통합한 양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때.

(라) (다)항의 (1) 또는 (2)에 따라 증명된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은 그 가격이 합중국 정부의 세출 예산 또는 합중국 지급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기여금에서 지급되는 한,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조세가 면제된다.

4. 제3항에 관하여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 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함을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최종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계약자가 통합될 품목이거나 또한 합중국 군대와의 계약에 의하여 최종 생산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품목을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조달함을 말한다.

제17조

1. 대한민국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요된 직접 경비에 대하여 변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노동 관계 법령을 따른다는 약속은 합중국 정부가 국제법상의 동 정부의 면제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정부는 고용을 계속하는 것이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의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어느 때든지 이러한 고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3. 고용주는 대한민국 소득세 법령이 정하는 원천 과세액을 그의 고용원의 급여로부터 공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

4. 고용주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 때문에 본 조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적당한 조치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관과 아메리카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조합 또는 기타 고용원 단체는, 그의 목적이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공동이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고용주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체에의 가입 또는 불가입은 고용이나 또는 고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제13조에 규정된 제기관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그들의 가족 및 제15조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급은 대한민국의 외환 관리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거

래에 사용되는 자금은 환산되는 당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위법이 아닌 합중국 '불' 대 대한민국 '원'으로 표시되는 최고환율에 의하여 대한민국 통화로 환산되어야 한다.

제20조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합중국 정부의 기타 공무원,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은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

본 조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 이외의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연합 군대의 인원내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현행의 협정, 약정 또는 관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항 (가)에 관하여

합중국 법률의 현상태하에서 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협상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개정 또는 합중국 관계 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합중국 군사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 조의 규정은 계엄령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즉시 정지되며, 합중국 군당국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러한 지역에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2.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재판권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어떠한 범죄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합중국 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다)에 관하여

각 정부는 본 세항에 규정된 안전에 관한 모든 범죄의 명세와 자국법령상의 이러한 범죄에 관한 규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가)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이 어느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가 그 자에 의해서 범하여진 것이라면, 그 범죄가 공무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는 뜻을 기재한 증명서로서 합중국의 주무 군당국이 발행한 것

은 제1차적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사실의 충분한 증거가 된다. 본 조 및 본 합의의사록에서 사용된 '공무'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기간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집행하고 있는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공무집행증명서에 대한 반증이 있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반증은 대한민국 관계관과 주한 합중국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한 재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3항 (나)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법에 불복하는 자에 관하여 질서와 규율을 유지함이 합중국 군당국의 주된 책임임을 인정하여, 제3항 (다)에 의한 합중국 군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 (나)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

2.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관계 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합중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대한민국의 법원이나 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대한민국 관계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의 동의를 얻어 수사, 심리 및 재판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가지는 특정 형사사건을 합중국 군당국에 이송할 수 있다.

3. (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여 범한 범죄 때문에 합중국 법원에 소추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판은 대한민국 안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1) 다만, 합중국의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또는

(2) 군사상 긴급 사태의 경우 또는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합중국 군당국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판을 행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경우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이러한 의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적시에 부여하여야 하며 대한민국 당국이 진술하는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질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의 장소와 일자를 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표는 그 재판에 입회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당국은 재판과 소송의 최종결과를 대한민국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4. 본 조의 규정의 시행과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관계 당국과 합중국 군당국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6항에 관하여

1.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안에서 이러한 당국이 행하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증인을 출석하도록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 증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정에 출석하도록 소환을 받은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군사상의 긴급 사태로 인하여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출석이 대한민국 법률상 강제적인 것을 조건으로 그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긴급 사태로 인하여 그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출석 불능의 예정 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이나 피고인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 서류의 송달이 군사 시설이나 구역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송달인에 의하여 집행될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송달인이 이러한 송달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제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관련된 대한민국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즉시 모든 형사상의 영장 (구속영장, 소환장, 공소장 및 강제소환장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전기(前記) 영장을 영수할 합중국 군당국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거주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필요로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자를 출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타기관을 통하여 행한다. 증인에 대한 비용과 보수는 제20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2. 증인의 특권과 면제는 그가 출석하는 법원, 재판부 또는 기타 당국의 법률이 정하는 바로 따른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부죄(自己負罪)의 우려가 있는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이나 합중국 당국의 형사소송의 진행중에 어느 일방 국가의 공무상의 비밀의 진술 또는 어느 일방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진술이 소송 절차의 정당한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국은 이러한 진술에 대한 서면상의 승락을 관계 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제9항 (가)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지체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수습 기간을 마친 법관으로서 전적으로 구성된 공정한 재판부에 의한 공개재판을 포함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제9항 (나)에 관하여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또한 그는 자신과 그의 변호인이 참여한 공개 법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 지체없는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그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통지받아야 한다. 그는 재판에 앞서 상당한 기간 전에 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증거의 내용을 통지받아야 한다.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가 청구하면 당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대한민국 법원에 송부된 서류 중 대한민국 당국이 수집한 증인의 진술서를 공판전에 조사하고 녹취(錄取)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제9항 (다) 및 (라)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모든 소송상의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있어서 모든 증인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9항 (마)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참여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권리와 이러한 변호인과 비밀히 상의할 권리를 포함한다.

제9항 (바)에 관하여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한다.

제9항 (사)에 관하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채택되지 아니한다. 동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모든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어떠한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권리가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거부되었거나 거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정부의 대표는 그러한 권리의 거부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합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본 조 본 항 (가) 내지 (사)에 열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유죄 판결 또는 형의 선고에 대하여 상소할 권리,

(나)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 시설에서의 판결 선고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

(다) 행위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라) 혐의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판결 선고시에 적용되는 형보다도 중한형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마) 범죄의 범행후 피고인에 불리하게 변경된 증거 법칙이나 증명요건에 의하여 유죄로 선고받지 아니하는 권리,

(바)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제당하거나 또는 달리 자기부죄(自己負罪)를 강제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사) 참혹하거나 비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아) 입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자) 동일범죄에 대하여 이중으로 소추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차) 심판에 출석하거나 자신의 변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적당한 때에는 심판에 출석하도록 요청받지 아니하는 권리,

(카) 적절한 군복이나 민간복으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하여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만에 의하거나, 신체 구속의 자기화에 의하여 수집되거나 또는 임의로 행하여지지 아니한 자백, 자인 또는 기타 진술 및 고문, 폭행, 협박이나 기만에 의하고나 영장없이 불합리하게 행한 수색 및 압수의 결과로서 수집된 물적 증거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하여 본 조항에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 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며,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한다.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구금되었거나 그러한 개인이 구금될 구금 시설을 시찰할 권리를 가진다.

적대 행위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재판 이전이거나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형의 복역중이거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구금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자를 책임있는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둘 것을 합중국 군당국이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양정부가 이를 합의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한 사형의 집행 또는 구금,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기간중 또는 유치를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은 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최소한도의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요청하면 대한민국의 당국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유치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과 언제든지 접견할 권리를 가진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의 구금 시설에 유치되고 있는 피구금자와 접견하는 동안 의류, 음식, 침구, 의료 및 치아치료등 보조적인 보호와 물건을 공여할 수 있다.

제10항 (가) 및 제10항 (나)에 관하여

1. 합중국 군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통상 모든 체포를 행한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대의 관계 당국이 동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당국이 시설과 구역안에서 체포를 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고자 하는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그자를 체포할 것을 약속한다. 합중국 군당국에 의하여 체포된 자로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시설이나 구역의 주변에서 동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이 아닌 자는 즉시 당국에 인도되어야 한다.

2.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서 사람이나 재산에 관하여 또는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합중국의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할 권리를 통상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중국의 관계 군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의 이러한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검증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안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 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합중국 재산에 관하여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색, 압수 또는 검증을 행할 것을 약속한다. 전기(前記) 재산에 관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합중국 정부나 그 부속 기관이 소유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합중국은 합중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당국에 재판에 의한 처리를 위하

여 그 재산을 인도한다.

제23조

1.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의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서울 특별시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후 6개월만에, 그리고 대한민국내의 다른 곳에서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 후 1년만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이 일정 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될 시기까지,

(가) 합중국은 동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공부집행중의 작위나 부작위, 또는 동국 군대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기타의 작위, 부작위 또는 사고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양국 정부 이외의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계약에 의한 청구권은 제외한다)을 처리하고 해결한다.

(나) 합중국은 동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에 대한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기타의 청구권을 수리하여야 하며, 또한 합중국의 관계 당국이 결정하는 그러한 사건과 금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다) 각 당사국은 자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공무집행에 종사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및 자국 군대가 공용을 위하여 자국이 소유하는 재산을 사용하였던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가진다.

3. 제5항 (마)의 규정은 제2항 (라)의 적용상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에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효력을 발생한다.

제28조

제1항 제1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는 제3조 제2항 (나) 및 (다)에만 관련된다.

서울에서, 1966년 7월 9일

/이니시알/ /이니시알/

이 동 원 윈드롭 지. 브라운

3) 합의양해사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계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양해사항

서명 : 1966. 7. 9

발효 : 1967. 2. 9

제9조

제5항

1. 대한민국 세관검사관에 의한 대한민국내 합중국 군사우체국 우편물에 들어 있는 소포의 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소포의 내용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또한 우편물의 배달을 지연시키지 아니하도록 행한다.

2. 이러한 검사는 합중국 직원의 입회하에 합중국 군사우체국 시설 내에서 행한다.

3. 상호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우체국 우편물의 여하한 소포도 합중국 우편 경로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다.

4. 검사권은 부당하게 배달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우체당국의 행정상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본 검사" 기준에 따라 행사될 것으로 양해한다.

합의 의사록 제3

1. 관계정보는 화물 적화목록 및 선적 서류를 포함한다.

2.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추가하여, 기타 관계정보는 합동위원회를 통한 요구에 따라 제공된다.

제13조

합의 의사록

(가), (나), (다), (라) 및 (마) 항목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기관 및 인원에 의한 비세출 자금 기관의 현재의 사용은 본협정의 효력발생시에 즉시 정지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본위사록(바)항목에 따라 이러한 기관의 사용이 허용된 기관과 인원의 범위는 양국정부의 관계당국간의 계속적 협의에 위임한다.

제15조

제1항

합중국 당국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제3국 법인을 합중국 군대의 초청 계약자로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본 협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8항

합동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본조 제8항의 2단에 규정된 특권은 합중국 국민에게만 부여된다.

제17조

제1항(나)

1. 본 협정 효력 발생일자에 제3국 국민이며, 또한 원화로서 지급되는 현지 채용 합중국 군대 고용원과 현지 채용 초청 계약자 고용원인 현지 거주자는 본 규정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2. 제1항(나)의 규정은 합중국 군대가 한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3국 계약자 고용원을 특권 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의 이탈은, 합동위원회에의 회부가 비상시에 있어서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19조

대한민국과 합중국은 본 협정의 어느 것도 대한민국과 합중국의 관계당국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여하한 적절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을 전혀 방지하지 아니하는데 합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군표처리 문제를 동의하려는 대한민국 당국의 요망을 인정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및 합중국 양 당국은 인가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군표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한 여하한 언급도 주둔군 지위협정 조문으로부터 제거하는데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다른 경로를 통한 본 문제의 토의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국의 입장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고가 있으면 합중국군 당국은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제1항 (나)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의 예포,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본조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전속적 재판권의 표기를 요청함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

1. 제3항 (가)에 관한 합의 의사록에 관하여, 어떤 자가 특정 공무에 있어서 행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로부터의 실질적 이탈은, 통상 그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집행 증명서는 법무참모의 권고에 의하여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공무집행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무 당국자는 장성급 장교라야 한다.

3. (가) 수정이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검찰총장이 제기하는 여하한 이의에 대하여도 정당한 고려를 해야 한다.

(나) 피의자는 공무증명서의 지연된 재고 결과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재판에 대한 그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1. "특히 중요하다"는 용어는 개개의 특정 사건을 신중히 조사한 후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에 관련되며 또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범죄에 관련되나 그와 같은 종류의 범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양해한다.

(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나)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강도죄 및 강간죄, 다만, 그 범죄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다) 전기 각범죄의 미수 또는 공범

2. 전항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관계 당국은 제22조 제6항에 규정된 상호간 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특히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당국의 견지에서 사건이 특히 중요한 것이라는 결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합중국 외교 사절은, 대한민국의 관계당국과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기대한다.

제5항

안전에 관한 범죄에 관련하여 한국 당국의 수중에 이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 :

1. 그러한 구금을 하기에 적절한 환경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에 상호합의가 있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구금시설은 합중국 수준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제9항 (가) 후반에 관한 합의 의사록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 절차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항소 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제12항

한국 노무단원에 의하여 제기된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5조

본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력함에 있어서 각 정부는 합중국 군대, 그 구성원, 군속, 초청 계약자에 관한 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있는 자, 그들의 가족 및 그들의 재산의 보안과 보호를 보장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양국 정부는 합의한다.

/이니시알/ /이니시알/

T.W.L. W.G.B

4) 교환서한 : 제22조 및 합의의사록 제3항 (나)에 관한 대한민국
외무부장관과 주한합중국 대사간의 1966년 7월 9
일자 교환서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미대사에게 보내는 제의서한

1966년 7월 9일

각 하,

금일 대한민국 정부와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합중국 정부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하였습니다.

동 협정의 제22조 및 동 합의 의사록은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양 국가를 결속하는 상호 존중과 우의의
강인한 유대를 의식하고 또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어서 수행하
는 중대한 역할을 인정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른 절차상
의 약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배치된 합중국 군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
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
는 한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권을 가진다.

사법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그와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의
그의 제1차재판권에 속하는 범죄 발생을 통고 받거나 또는 알게 된 후 15일내에, 또는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 제4항에 따라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보다 단기간내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합중국의 관계 군 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15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판권을 행
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인은 상기 양해 사항에 대한 각하의 확인을 감사히 여기는 바입니다.

/ 서명/ 이 동 원 외무부장관

아메리카합중국 대사 윈드롭 지. 브라운 각하

대한민국, 서울

주한 미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보내는 회답서한

1966년 7월 9일

각하,

본인은 금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에 서명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
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에 관한 각하의 공한을 접수하였으며, 합중국 군
대의 구성원, 군대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에 관하여 동 공한에 포
함된 다음과 같은 양해 사항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상호방위 목적을 위하여, 대
한민국에 배치된 합중국 군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건의 처리를 신
속히 하기 위하여 제3항 (나)에 관한 합의 의사록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
한민국 정부는 개개의 특정 사건에 있어서 합중국 군당국에게 포기를 요청할 것
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재
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합중국 군당국은 재판
권을 가진다.

사법행정의 신속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그와 같은 결정은 대한민
국이 그의 제1차 재판권에 속하는 범죄 발생을 통고받거나 또는 알게 된 후 15
일내에 또는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4항에 따라 상호 합의될 수 있는
그보다 단기간내에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합중국의 관계 군당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15일 또는 달리 합의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판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서명 / 윈드롭 지. 브라운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 동 원 각하

서울

5. 개정 한-미 SOFA(1991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및 구역과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합의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서명 : 1991. 2. 1

발효 : 1991. 2. 1

대한민국-미합중국 합동위원회는 주둔군 지위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들 문서의 시행에 관하여 아래 양해사항을 기록한다.

제2조

제1항 (나)

대한민국은 재사용권 유보하에 반환된 시설과 구역에 대해 유보된 재사용권 포기를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합중국 군대에 요청할 수 있고, 합중국 군대는 그러한 시설과 구역이 가까운 장래에 재사용될 것으로 예견되지 않으면 이러한 제의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3항

1.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주둔군 지위협정 제2조하에 공여된 모든 시설과 구역을 검토한다.

2.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느 때든지 합동위원회 또는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주한미군에게 특정한 시설과 구역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9조

제5항

1. 합중국 군사우체국 경로를 통하여 배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대한민국 세관 검사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된다.

2.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이사 물품이나 개인선적화물이 군대 구성원 개인,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에서 우송될 때 그들의 숙소에서, 그들의 입회하에 합중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 세관당국은 합중국 당국의 어떠한 예정된 검사도 입회할 수 있다. 특정 화물에 금수품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양

의 물품이 포함된 것이 심각히 의심된다는 대한민국 세관당국의 적절한 사전 통보가 있으면 합중국 당국은 예정되지 않은 검사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숙소에서 그리고 구성원 개인, 군속 또는 허가된 요원의 입회하에서 그러한 예정되지 않은 검사에 참관할 기회가 부여된다.

3.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주한미군의 공인된 조달기관과 제13조에 규정된 비세출 자금기관을 포함한 주한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하지 않는다. 비세출자금기관에 탁송된 화물에 대해서는 합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에 정기적으로 화물 목록과 선적서류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관련 정보는 요청에 따라 합동위원회 또는 면세물품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를 통해 제공된다.

제6항

합중국 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에 만족스럽고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관련 관세 법령에 합치하는 시행 절차에 관하여 대한민국 당국과 협의한다. 합중국 당국은 언제라도 그 군대의 구성원, 군속, 초청계약자의 고용원과 이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덜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

합의의사록 제4

대한민국의 적절한 관계자는 명령하에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합중국 군대 구성원에 대한 합중국 관계자의 검사에 입회지로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

합중국 당국은 비자격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 기관 이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을 한다. 관련 주둔군 지위협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비세출 자금기관의 모든 한국 민간인 회원자격과 그 보고절차를 년2회 검토한다.

제15조

제1항

1. 주한미군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 법인을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로 사용함이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하여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당국은 이러한 비합중국 법인에게 본 협정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합중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노동력으로부터 획득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3국계약자 고용원을 특권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

제16조

1. 주한미군의 계약활동은 현지 계약회사 등록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요구사항을 존중한다. 주한미군과의 영업계약자에 대해서만 특별히 요구사항이 부과되는 않는다. 주한미군과 계약이 허가된 계약자는 군납협회나 유사 기관에 가입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2. “현지 계약회사 등록에 관한 행정적 요구사항”은 현지 회사의 등록과 면허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적기준과 절차를 의미한다.

제17조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

1. 제3항에 사용된 “주한미군”은 제15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 제3항에 사용된 “따라야 한다”는 고용조건, 보수와 노사관계가 본 조항 또는 합의의사록 제4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

3. 제3항과 합의의사록 제2와 제4에 사용된 “군사상 필요”는 합중국 군대의 군사목적 수행을 위해 해결 조사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4. 합의의사록 제4항 규정된 대한민국 노동법령으로부터 이탈은 이의 합동위원회 회부가 비상사태가 군사 작전을 심각히 저해할 경우 반드시 회부되지 않아도 된다.

제4항 (가)

1.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은 본항 하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의 정당하고 공정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한다.

2.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노동조합 간부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한민국 노동부의 적절한 관계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4항 (가) (2)

1. 조정노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는 문제된 쟁의를 조사함에 있어서 고용주 대표를 포함하여 해당 쟁의를 알고 있는 인원과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다.

2. (가)본항 하에서 특별위원회에 회부되는 쟁의는 주로 단체행동 사안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부는 개인사안도 고용원이 그 사안에 대한 고용주의 최종결정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추가 검토를 소청하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사실을 발견하면 합동위원회 또는 노무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1) 고용주의 최종결정이 통상적인 청원절차를 마친후에 내려졌고,

(2) 해당 고용원이 소청에 동의하고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임을 서면으로 합의하며, 그리고,

(3) 현저히 불공정한 결정이나 적절한 행정절차의 거부가 있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이러한 절차에 있어 고용원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 또는 개인대표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 회부되는 개인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사안은 제4항 (가) (3)에서 규정된 바와같이 추가검토를 위해 합동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특별위원회의 개인사안 검토는 사안에 대한 행정기록과 고용원 또는 고용주에 의해 제출된 서면요록이나 구두논의에 한정된다. 특별위원회는 복직과 보수의 소급 지급까지를 포함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명령할 전권을 가진다.

(다)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에서 각각 동수로 대표되는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모든 위원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검토중인 사안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자이어야 한다. 모든 결정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22조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1.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의 후단에 의한 통고가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 형사재판권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러한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합의한다.

2. 대한민국의 계엄령으로 인하여 어느 국가도 평시 한국 민간법원에서 처벌할 수 있는 합중국 군속과 가족의 quac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방지하고 동시에 이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이 이들을 주둔군 지위협정의 일반적인 안전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보장하면 합중국 군속 및 가족에 대한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항 (나)

대한민국 민간당국은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조기 체포,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완전한 통할권을 보유한다.

제2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당국은 전속적 포기를 요청함으로써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제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 (가)에 관한 합의의사록

1. 어떤 자가 특정 임무수행을 요구하는 행위로부터 실질적으로 이탈하면, 이는 통상 그 자의 “공무”밖의 행위를 뜻한다.

2. 공무증명서는 법무참모의 조언에 따라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장성급 장교만이 공무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

3. (가) 합의 수정되지 않는 한, 증명서는 결정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집행서에 대해서도 토의, 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합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제기하는 여하한 의견에 대해서도 정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나) 대한민국의 하위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어떠한 공무증명서에 대하여 토의, 질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관의 검사는 어떠한 의문시되는 공무증명서에 대하여도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참모 또는 적절한 법무장교와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검사의 동 증명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무부 해당 당국자는 어떠한 남아있는 미합의 사항도 주한미군 법무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과 토의할 수 있다. 만일 공무증명서가 지방검사에게 최초로 제출된 후 2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남아있는 미합의 사항은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회부될 수 있다. 만일 합동위원회 또는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가 합당한 기간내에 남아있는 미합의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을 하도록 회부될 수 있다. 피고인이 지체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공무증명서 검토지연으로 박탈되지 않도록 하기는 동 협의의 계속과는 관계없이 합중국 군당국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 비사법적 징벌 부과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항 (나)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3(나)

본 조항에서 대한민국 대표가 대한민국 영역밖에서 행해지는 군대구성원, 군속 또는 이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 참관할 수 있도록 명기한 것은, 이러한 재판이 대한민국의 영역내에 행해질 때, 이에 참관할 관리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3항 (다)

1.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일차적 관할권 포기를 요청코자 할 경우, 해당 범죄발생을 통보받거나 달리 알게된 후 21일을 넘지 않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일차적 관할권을 가진 당사국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28일 이내에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타방 당사국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3.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일차적 관할권을 가진 당사국은 원래의 28일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확인하면서 통상 14일을 넘지 않는 특정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4. 일차적 관할권을 가진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그 결정을 타방당사국에 통보하지 않을 때는 요청 당사국이 경합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항 (다)

1. 합중국 정부는 제22조 제5항(다)의 마지막 문장이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 계속을 위해서 대한민국 당국이 합중국 군당국에게 협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데에 동의한다. 오히려, 이 규정은 합중국 군당국이 수사와 재판을 위한 대한민국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피의자를 출두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할 경우 신병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대한민국 당국은 적절히 임명된 합중국 대표의 입회하에 합중국군대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을 심문할 수 있으며 체포후 신병을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하기 전에 사건에 대해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의 순간부터 존재하며 동 권리는 변호인을 출석시킬 권리,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든 예비적 수사, 조사, 재판적 심문, 재판절차 자체 그리고 후속절차에서 그러한 변호인과 비밀리에 상의할 권리들을 포함한다. 합중국 대표는 불편부당한 입회자이어야 하며 합중국 대표와 변호인은 어떠한 심문에도 개입할 수 없다.

3. 대한민국 당국은 재판전 구금 또는 금족의 시설이 합동위원회에 의해 설정된 기준에 합치하거나 그 이상일 것과 피의자는 합중국의 적절한 대표 및 변호인과 정기적인 연락 및 방문이 허용되고 형확정자와 혼재 수감되지 않으며 최종 선고전에 징역에 처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제22조 제9항(가)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는 최초로 재판전 구금에 처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대한민국 국내법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내에 기소되거나 석방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최초 구금일로부터 6개월내에 또는 대한민국 국내법이 정하는 보다 짧은 기간내에 피의자에 대한 일심 재판이 완료되거나 석방이 되어야 한다.

제5항 (라)

안전에 관한 범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의 수중에 있는 피의자의 구금에

관하여는 그러한 구급을 하기에 적절한 경우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9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2단 (가)

대한민국 법원의 항소 절차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항소법원에 의한 새로운 사실에 발견을 위한 근거로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포함한 증거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1. 미군 당국은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허가된 모든 입국항에서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분기별로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에 제출한다. 그러나 그러한 질병이 발견되면 주한미군은 적절한 격리조치를 취하고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양해한다.

2. 미군 당국은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또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감염자로 판명된 주한미군 요원의 한국인 접촉선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즉시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제공한다. 또한, 미군 당국은 요원중 후천성 면역결핍증 또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발견에 관한 분기별 통계정보를 대한민국 관계 보건당국에 계속 제공한다. 나아가, 미군 당국은 전염병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질병 발생시 수시로 제18의무단 방역부대 참모 또는 적절한 후속 부대와 직접 접촉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한다.

대한민국과 합중국 양 의장은 상기 문제들의 성공적인 해결에 비추어, 장래에 주둔군 지위협정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 합동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계속 회부할 것을 합의한다.

1991년 2월 1일 서울에서 서명하였다.

한국어와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양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본 협정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한 양국간의 의견 차이는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 사항은 양국 정부간 외교경로에 회부된다

반 기 문	로날드 알. 포글만
외무부 미주국장	미공군 중장
대한민국 대표	미합중국 대표

6.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1991년 ~ 1999년)

1) 제1차 협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서명 : 1991. 1. 25

발효 : 1991. 2. 2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둔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 미군'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주한미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주한 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

제2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매 회계연도마다 이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고한다.

제3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주둔군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고한 날부터 발효하며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1년 1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미합중국을 위하여

2) 제2차 협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서명 : 1993. 11. 23

발효 : 1994. 1.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과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둔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주한미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1991년 1월 25일 서명되어 199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유념하여,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하였다.

제1조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경비의 공정한 부분을 부담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1995년까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 1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한다는 1991년 제2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의 양 당사국간 합의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의 매 회계연도마다 이협정 제1조에 따라 부담할 경비의 실제액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속히 미합중국에 통보한다.

제3조

원화지출경비는 미군 현역 및 군속에 대한 급여와 기타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현지발생 경비로 정의한다.

제4조

방위비분담금은 양 당사국이 임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출분야에 배분된다.

제5조

양 당사국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합동위원회나 이 협정 제4조에 언급된 방위비분담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의 체제내에서 이 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제6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승인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후 1994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며 199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제7조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을 위한 국내법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문서로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3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